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농지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외에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고,

개정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마련함(안 제49조제2호의2 및 부칙).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

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,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	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2. (생략)	1.2. (현행과 같음)	1.2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</u>	<u>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</u>
3.4. (생략)	3.4. (현행과 같음)	3.4. (개정안과 같음)

	<u>부칙</u> <u>이 법은 공포 후 6</u> <u>개월이 경과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	<u>부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법</u> <u>은 공포 후 6개월</u> <u>이 경과한 날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양식업 허가</u><u>에</u> <u>따른 인·허가 등의</u> <u>의제에 관한 적용</u> <u>례) 제49조제2호의</u> <u>2의 개정규정은 이</u> <u>법 시행 이후 제43</u> <u>조제1항에 따라 양</u> <u>식업의 허가를 받</u> <u>은 경우부터 적용</u> <u>한다.</u>
--	---	--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3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김재원 · 문대림
이재정 · 차지호 · 정준호
정일영 · 김동아 · 김영진
권향엽 · 김승원 · 김주영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「농어촌정비법」 및 「하천법」 등에 따른 승인·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·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·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,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인·허가 의제 대상에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·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외에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고, 제4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마련함(안 제49조제2호의2 및 부칙).

법률 제 호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식업 허가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	제4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의 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의2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</u>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